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426 호

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13.

국토교통부장관

인증번호 (인증취득일)	성명(법인명)	처분내용	처분일자	처분근거
제CPDS-2022- 분리형-05호 (2022.10.21.)	슈퍼히어로	인증취소	2023.11.13.	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 제1항 제3호

* 업체 사정으로 인한 인증 자진반납의사에 따라, 인증 취소 절차 진행